

先進企業 具現을 위한 特許情報

進企業의 지름길은 迅速한 核心技術情報의

V. 情報의 分類整理

다) 特許文獻의 識別標準 Code

前號에서 말한 바와 같이 資料整備時는 整理對象資料에 對한 概略의 知識을 갖고 있어야 한다.

前號에 이어 特許公報類의 分類整理時 알아두어야 할 事項으로는 國名 Code 와 特許文獻의 識別標準 Code 가 또 있으나 本稿에서는 特許文獻 識別標準 Code만을 紹介하여 둔다.

特許文獻識別標準 Code란 各種特許文獻을 識別하기 위한 PCPI(特許情報에 關한 常設委員會)의 標準 Code 의 하나이다.

特許文獻을 文字 Code 로 識別하여 文獻의 保管 및 檢索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PCPI標準 SI.8 Code라고 한다.

標準 SI.8 Code는 <Alphabet文字>+<數字>로 構成된다. <Alphabet文字>는 工業所有權의 種類와 公開의 Level을 나타낸다. <數字>는 各國에서 定하여 쓰도록 Option-Code로 되어있다.

<Alphabet文字> Code에 依한 識別記號는 아래와 같다.

<Group 1> 特許文獻의 最初 또는 主된 Series에 使用

- A 第 1次公開
- B 第 2次公開
- C 第 3次公開

<Group 2> 特許文獻의 2次 Series에 使用

- E 第 1次公開

F 第 2次公開

G 第 3次公開

[Group 3] 各廳이 特別히 必要로 하는 特許文獻 以外의 Series에 使用

H

I

[Group 4] 特許文獻中 主要한 特殊 Type의 文獻에 使用

M 醫學特許文獻

P 植物特許文獻

S Design特許文獻

[Group 5] Group 1의 文獻外에 Number-Series를 갖고 있는 實用新案文獻에 使用

U 第 1次公開

Y 第 2次公開

Z 第 3次公開

[Group 6] 其他

N 非特許文獻

X 特許廳內 利用에 限定한 文獻

主要國의 特許文獻識別標準 Code適用例

<韓國>

公開特許公報 A

公告特許公報 B₁(公開公報가 發行되었을 境遇)

B₂(公開公報가 發行되지 않은 境遇)

公開實用新案公報 U

公告實用新案公報 Y₁(公開公報가 發行되었을 境遇)

管理(3)

入手活用



李 喆 秀
〈特許廳 司書官〉

論壇解説

이달의 目次

V. 情報の 分類整理

〈다음號에 繼續〉

意匠公報 〈日本〉	Y ₂ (公開公報가 發行되지 않은 境遇)	S	意匠公報 〈美國〉	Y ₁ (公開實用新案公報가 發行되지 않은 境遇)	S
公開特許公報		A	特許明細書	Y ₂ (公開實用新案公報가 發行된 境遇)	A
公告特許公報	B ₁ (公開特許公報가 發行되지 않은 境遇)		再發行特許明細書		E
	B ₂ (公開特許公報가 發行된 境遇)		防衛出願明細書		H
公開實用新案公報		U	植物特許明細書		P
			Design特許明細書		S

公報類에의 PCPI標準 Code適用例

(2) ⑤Int. Cl⁴. (1) ⑯대한민국특허청(KR) (3)
 D 02 G 3/24 (1) ⑰특허공보(B₁) (4) 제 1142 호

⑭공고일자 서기 1986. 3. 3 ①공고번호 86-206
 ⑮출원일자 서기 1982. 3. 23 ②출원번호 82-1233
 ⑯우선권주장 ⑱1981.4.1 1981.4.24 1981.7.4 1981.10.17 ⑳독일 심사관 유 인 봉
 ㉑P3113017,8 P3116304,1 P3126519,7 P3141343,9

㉒발 명 자 에버하트 크렌저
 독일연방공화국 디-5829 엔베페탈-뤼거버크 슈툼베크 58
 ㉓출 원 인 바마크 바머 마쉬네파브리크 악티엔게젤샤프트 대표자: 칼 하인즈 쉬퍼스 발터 킬러
 독일연방공화국 디-5630 렌샤이트 11 레버쿠저 슈트라세 65
 ㉔대리인 변리사 장 용 식 (전10면)

㉕섬유사 제조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의 개략도.
 제1a도는 본 발명 로울에 있어서의 사를 나타내며,
 제2도는 본 발명의 사로 루우프된 로울의 상부 평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패키지(2)에 감겨진 벌키사의 외관을 나타내며,
 제4도는 독일 공개공보 제2749867호(Bag, 105)에 기술된 것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의 개략도.

위에 例로 紹介한 資料中 ()로 뽑은 것을 說明하면

- (1), (2)는 INID Code
- (3)은 國名 Code, KR
- (4)는 特許文獻識別標準 Code, B₁

라) 公報資料 整備에 따른 現象과 對應

資料의 增大와 出願內容의 高度化 및 複雜化는 Search效率의 低下와 資料保管 Space의 增大現象으로 因하여 資料管理는 全世界의으로 그 對應策 마련으로 腐心하고 있다. 여기에 特許廳에서의 對應策을 紹介하니 特許廳資料利用時 參考하기 바란다.

現 象	問 題 點	對 應	具 體 的 對 應 策
○資料의 增大 ○出願內容의 高度化 및 複雜化	○Search 效率의 低下 ○資料保管 Space의 增大	○資料利用頻度에 依한 整備 ○Space의 有效利用 ○重複資料의 整理 ○機械檢索의 利用	○資料의 利用頻度에 依한 配置 ○資料의 利用頻度에 依한 加工 ○2 Step Search의 利用 ○Micro Film의 活用 ○Patent Family 整理 ○國內外 情報機關의 活用

마) 資料整備의 種類

公報類의 利用目的은 多種多樣하나 이에 對應하는 公報類의 整理方法으로서는 大別해서 番號順과 分類別 및 出願人別 整理의 3種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이나 利用目的에 따라 一長一短이 있다.

可能하면 위에서 말한 모든 方法을 다같이 併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1) 番號順 整理

番號順整理에는 出願公開番號(特·實만 該當) 出願公告番號順(意匠은 除外) 및 特許(登錄)番號順의 3種類가 있다. 番號順整理의 利點은 出願公開番號順, 出願公告番號順 및 意匠登錄番號順에 對해서는 特許廳에서 發行한 公報를 그대로 發行順으로 配列整理하면 되며 整理에 要하는 時間이 別로 들지 않는다. 그리고 番號를 갖고 公報에 Access하는 利用者에 있어서도 便利하다.

그러나 前記한 調查目的의 80%以上을 占하는 先行技術調查(어떤 技術分野에 屬하는 技術 또는 權利를 調查)나 出願人調查(特定企業의 出願動向을 調查)等에는 效率의인 調查를 期待하기는 어려운 點이 있다.

(2) 分類別 整理

分類別 整理의 目的은 龍대한 量의 情報를 技術分野別로 區分하여 當該技術分野에 어떤 出願이나 權利가 存在하는가를 알 수 있게 整理하는 것이며 利用자가 希望하는 技術分野에 先行技術 등의 調查를 보다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前記와 같이 利用자의 調查目的에 80%以上이 先行技術調查이고 今後의 公報發行量을 勘案할 때 分類別 整理는 提供者側으로서 利用자의 調查目的에 充實하게 對應하는 措置가 되는 것이다.

分類別 整理에 있어 特許 및 實用新案(公開公報包含)公報는 IPC, 意匠公報는 意匠物品區分, 商標公報는 商品區分으로 整理한다.

이중 IPC에 依한 整理方法이 가장 複雜하며 整理 Level은 다음중 하나를 選擇하게 된다.

- Section8
- Class118
- Sub class.....617
- Group.....55, 538

(註) 以上은 IPC 第3版에 依한 것이나 IPC는 5年마다 改正되며 IPC 第4版은 全 Group數가 58,545個項으로 改正 되었다.

利用者로서는 分類 Level이 細分化될수록 當該技術分野 把握이 容易하게 됨으로 事情이 許

誼하는 限 細分化된 Level로 整理함이 바람직하다.

(3) 出願人別 整理

出願人別 整理는 公報를 出願人別로 區分해서 整理하는 것이다. 近年 特許公報類의 利用方法이 多樣化하여지면서 特定企業(出願人)의 出願動向調査에 有效한 整理方法으로 使用된다.

그러나 出願人別 調査는 分類別 調査에 비해 그 利用率이 적을 뿐만 아니라 別途로 出願人別 索引등이 있으므로 이를 利用하고, 一般的으로는 分類別 整理를 優先하고 여유가 있을때 出願人別 整理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 公報類의 整理方法

公報類의 整理方法으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番號順整理와 分類別 및 出願人別 整理方法이 있으나 여기서는 一般的으로 많이 쓰이는 分類別 整理方法만을 略述하고자 한다.

(1) 分類別 整理

우리나라는 1983.1월부터 從來 使用하던 韓國

特許分類(KPC)를 廢止하고 國際特許分類(IPC)를 唯一한 特許分類로 採用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도 IPC에 依한 分類別整理에 對해서만 說明하기로 한다.

公報에 付與되어 있는 分類에는 發明情報, 參考情報 및 相補情報의 三種(一種 또는 二種만 付與되어 있는 것도 있음)이 있다.

이와 같은 情報의 IPC에 依한 分類整理에는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IPC에 依한 分類整理의 種類

情報의 種類 Level	發明 情報		參考情報	相補情報
	第一發明情報	全發明情報		
Class	◎	◎	◎	○
Sub Class	◎	○	○	○
Main Group	◎	○	○	○
Main 및 Sub Group	○	○	○	○

※ ◎는 整理方法에 對해서 앞으로 說明이 있는것임.

IPC表示의 例

<47page에서 계속>

⑬ 日本國特許廳(JP) ① 特許出願公告

⑫ 特許公報(B2) 昭56-9189

識別記號 廳內整理番號 ⑭ ⑮ 公告 昭和56年(1981)2月27日

7167-4J 發明의數 1

⑥ Int. Cl.³
C 09 J 3/14
C 08 L 51/00
"C 08 F 8/14
289/00
(C 08 L 51/00
91/06
23/06)

(全 6 頁)

情報의 種類	Level	Section	Class	Sub Class	Main Group	Sub Group
發 明 情 報		{ C	09	J	3/	14
		{ C	08	L	51/	00
參 考 情 報		{ "C	08	F	8/	14
		{			289/	00
相 補 情 報		{ (C	08	L	51/	00
					91/	06
					23/	06)

1984년의 경우 13,312件이 있는데 1983年보다 38%가 증가된 숫자이며 이중에서 65%는 締約國에, 35%는 非締約國에 特許가 許與되었다.

7) 抗告審判

受理課·審査部·異議部에서 내려진 모든 決定(특히 대개 경우 拒絶事定에 대한 不服이 있는 경우다)에 대하여 出願人은 抗告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데, 決定통지를 받은후 2個月 이내에 해야한다.

청구된 抗告審判은 DG3에서 처리하기전에 먼저 DG2의 해당 審査部로 보내지게 되며 審査部에서는 抗告請求時 제출된 보정서를 참조하여 그 決定을 번복할 수 있다. 만일 審査部에서 그 決定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抗告審判請求件은 DG3로 보내어져서 抗告審判部(Boards of Appeal)가 구성되어지고 있어서 審理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日本特許制度에서 볼 수 있는 審査轉置主義와 유사한 것이다.

8) 이의신청

유럽特許法은 登錄査定後 9個月안에 누구든지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즉 出願公告에 대한 異議申請이 아니고 이미 特許許與된 特許權에 대한 異議申請이다. 따라서 拋棄 또는 消滅(lapsed)된 特許에 대하여도 異議申請이 가능하고 審査部에서도 異議申請할 수 있다.

異議申請에 대한 審査는 3人的 技術審査官에 의한 合議體로 진행되며, 必要한 경우에는 口頭審理(Oral Proceeding)가 행해지고, 이때 이의결정은 이의부의 議長(Chairman)이 口頭로 즉석에서 決定한다.

9) 유럽特許權

유럽特許權은 유럽特許公報에 公告된 날로부터 그 效力이 발생되고 有效期間은 出願日로부터 20年間이다. 또한 이 特許權이 締約國에 發效될때 締約國 特許廳에서 부여되는 特許權과 동일한 效力이 인정되며, 特許權의 侵害는 商標심판에서 다루워지지 않고 각 締約國의 國內法에 의해 다루워진다.

10) 口頭審理(Oral Proceeding)

우리나라 特許法 제113조(審理)에 의거 當特許廳에서도 無效審判에 대한 口頭審理를 운영하고 있고, 特

許法 第106條에 의거 3人的 審判合議體가 있어서 口頭審理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制度이다.

유럽特許廳의 경우에는 實體審査의 과정이나 異議申請과정에서 이 制度를 活用하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異議申請과정에서 出願人이나 申議申請人의 要求가 있을 경우는 所定の 절차에 의해서 口頭審理가 成立된다. 이때 3名의 技術審査官에 의한 異議審査部가 구성되며, 出願의 公告決定에 참여한 擔當審査官(Primary Examiner)이 審理를 主宰하고 최종결정은 議長이 구두로 즉석에서 한다.

1984년에 EPO에선 2,258件의 異議申請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108件이 口頭審理에 의해 決定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5년 이전까지 약 120件의 구두심리가 있었는데 매년 15件정도 審理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當廳에서 지난 4월부터 廳舍移轉과 함께 審判정을 새로 설치하고 口頭審理를 확대실시할 계획을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절차는 公正하고 內實있는 審判制度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31page에서 계속>

註 1. 發明情報

發明情報란 發明 그 自體에 關한 技術情報를 말한다. 即 發明에 直接的으로 또는 本質的으로 關係하는 技術主體를 말한다. 여기서 技術主體란 發明으로서 具現化되어 있는 「物」을 말하며, 通常 特許請求範圍에 依해 把握된다.

註 2. 參考情報

明細書中에는 發明정보로는 되지 않으나 有用하다고 생각되는 情報가 包含되어 있다. 參考情報는 그 중에 하나이다. 即 發明정보는 되지 않으나 技術的으로 注目하여야 할 事項을 말한다.

分類整理時 可能하면 參考情報도 分類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考情報는 IPC의 Section앞에 「//」로 表示한다.

註 3. 相補情報

發明정보 또는 參考情報와는 달리 發明정보에 對한 分類와 相補關係에 있고 發明정보의 他의 構成要素를 나타내는 것을 相補情報라 한다. 相補情報는 ()內에 記入된 情報이다. (IPC의 表示例 參考). (⊗)